

#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교통 2038**

(전화번호 )

경찰청  
경기도경찰청  
경주시청

발령일자 76. 6.

시행일자 76. 6. 22.

보급분할

제 1부시장 *[Handwritten Signature]*  
보조직원 *[Handwritten Signature]*

*[Large Handwritten Signature]*  
제 2부시장  
운수국장 *[Handwritten Signature]*  
법무담당관 (2차관심4월)

가안작성일자

경유 수할  
내부결재  
신조

제목 **도로교통법에 의한 고시제정**

**고시제정**

도로교통법 제 44조 7항 및 동법제 48조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도로상의 금지행위를 고시로 제정 실시

코저 합니다.

첨부 : 고시내용 1부. 끝

## 要 旨

- ✓ 1. 不附着物車輛進行禁止
- ✓ 2. 前照燈 下向操作義務化
- 3. 警音番 吹鳴禁止 (市內一圓)
- ✓ 4. 乘車 給油 禁止
- ✓ 5. 夜間燈光表設置 諸車輛進行禁止

장  
인  
승

# 가 안 용 지

|   |                    |                |
|---|--------------------|----------------|
| 분류기호<br>문서번호  | 교통 2038~<br>(전화번호) | 건설규정<br>국경전결사한 |
| 시의시관  | 76 6               |                |
| 시의시관  | 76 6               |                |
| 부속  | 각                  |                |
| 과   | 각                  |                |
| 계   |                    |                |
| 경수합   | 내부결재               | 등<br>계         |
| 도로교통법에 의한 고시제정  |                    |                |
| 도로교통법 제44조 7항 및 동법제45조에 의하여 별지와<br>같이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도로상의 금지행위를 고시로 제정 실시코자<br>함이다 |                    |                |
| 첨부 고시제정 1부 끝  |                    |                |

(制是事由)

道路交通法에 依한 運車者의 遵守事項과 道路上  
의 禁止行爲를 規制하여 各種危害를 豫防하고  
交通의 安全과 圓滑한 交通을 圖謀함에 效을

서울特別市 告示 第 號

고시안일사 1976 6 28

서울  
경찰관

道路交通法에 依한 制限告示

심사  
장

부

道路交通法 第 48 條 ~~제 48 條~~ 및 ~~제 48 條~~ 依하  
서 ~~운전자~~ 運轉者의 遵守事項과 道路상의 禁止行為  
를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76. 6. 28 日.  
서울特別 市長

1. (運轉者의 遵守事項): 自動車의 運轉者는 다음事  
項을 遵守하여야한다

가. 諸車의 運轉者는 車輛保安基準에 規定된 것이 아닌  
非常의 빛은, 燈光, 사이렌, 안테나 其他 物을 附着  
한 車輛을 運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諸車의 運轉者는 車輛의 유리를 不透明 (서막) 하  
게하거나 커튼類를 附着한 車輛을 運轉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 諸車의 運轉者는 運轉中 喫煙 또는 乘客과 雜談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旅客自動車의 運轉者는 停留所 標識柱 (標  
識板 또는 柱) 가 있을 最近거리에 停車하여야  
하며 安全을 確認한 후가 아니면 乘降口의 門을

열거나 乗客이 乗降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旅客自動車는 停留所에서 乗客을 乗下車시키기 전에 停車한 旅客自動車を 앞질러 나가서는 아니된다

바. 旅客自動車の 運転者는 乗客이 내리리 다면 遲滯 없이 出發하여야 한다

사. 諸車の 運転者는 重車両의 故障으로 進行이 不可能 할 때는 遲滯 없이 (道路의 右側端으로) (辟讓하거나 其他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나. 諸車の 運転者는 夜間에 交通이 頻繁한 道路에서 交行時 前照燈의 照射方向을 下向操作하여야 한다.

① 片道3車線 以上の 道路는 中央1車線 通行重車両

② 片道2車線 以下の 道路는 모든 交行重車両

자. 諸車の 運転者는 서울特別市 一區에서 集音器 (크랙손)을 吹鳴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旅客自動車는 進行中 乘車給油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二輪自動車 및 原動機裝置自動車는 道路의 右側

端을 通行하여야 한다

다 降而 降雪로 路面이 미끄러울 때에는 2輪  
自動車 또는 原動機裝置自動車 運轉者 以外의 者  
를 乘車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2輪自動車 및 原動機裝置自動車의 運轉者 및 乘車  
者는 반드시 헬멧을 着用하여야 한다

2. [道路상의 禁止行為] 누구든지 다음各款에 該當  
하는 行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道路上에서 3輪車 또는 諸車의 修理 行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잠시 손을보는 程度는 例外로 한다

나. 夜間에 灯火裝置가 無인 諸車을 乘車 通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施行日期] 이 법은 1966年 11月 1日 부터 施行한다~~